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0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30.
3. 회 부 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운영과 장기적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등장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과 배분 비율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

의사에 상응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 27조).

Ⅲ. 검토의견

1.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안 제27조)

현행 정당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을 보면, 크게 교섭단체 우선배분, 군소정당 균등배분, 국회의석 및 득표수 비율의 3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배분하고 있음.¹⁾

보조금 배분 시 ① 우선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균등 배분하고, ② 의석수가 20석 미만에서 5석 이상인 정당에게는 5%씩 배분하며, 5석 미만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으로 최근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득표

1)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 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를 한 정당에게 2%씩 배분하고, ③ 그 잔여분 중 50%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④ 나머지 50%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비례대표 및 지역구 득표수 비율의 평균)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원, %)

합 계 (288석)	더불어민주당 (142석)	국민의힘 (10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3석)	녹색정의당 (6석)
50,197,435,820	18,881,284,610	17,723,618,700	2,827,091,700	2,804,433,130	3,048,469,790
100	37.61	35.31	5.63	5.59	6.07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자유통일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기후민생당 (0석)
2,623,164,610	90,634,260	88,826,570	22,658,560	1,083,305,170	1,003,948,720
5.23	0.18	0.18	0.05	2.16	2.00

※ 무소속 등 12명(결원 3명 포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원)

합 계 (299석)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12,630,873,130	5,668,993,730	5,199,677,320	1,073,263,260	337,826,320
100%	44.88%	41.17%	8.50%	2.67%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292,292,720	8,659,960	8,659,960	41,499,860
	2.31%	0.07%	0.07%	0.3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은 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②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게는 10%씩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는 5%씩 배분하고, ③ 그 잔여분 중 50%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④ 나머지 50%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비례대표 및 지역구 득표수 비율의 평균)에 따라 배분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삭 제>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② 5석----- -----10씩을----- ----- ----- -----5씩을-----.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	③ 제2항의----- ----- ----- -----

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 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 · ⑤ (생략)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 금을 배분·지급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

개정안은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 선거제도 하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적으로 배분할 경우 의석수가 과다하게 고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임.²⁾

개정안과 같이 교섭단체 우선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게는 10%씩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는 5%씩 배분하는 경우, 현행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보다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현행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하에서는 지역구선거에서 많은 수의 사표가 발생하는데, 이 사표는 보조금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이슈와 논점 제474호 『독일사례를 통해 본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발행).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정당에의 우선배분 제도는 교섭단체의 국회 내에서의 역할과 그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서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는 바, 이의 폐지 여부 및 구체적인 보조금 배분기준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우리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은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